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5.

발 의 자 : 최은석 · 구자근 · 김상훈
진종오 · 추경호 · 이상휘
김승수 · 유용원 · 김은혜
박수영 · 이인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,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%를 운송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, 국가기간산업인 철강, 시멘트, 석유제품, 골재 등 국가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하고, 도서지역의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

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소수 대화주에 의한 시장지배로 운임인하를 요구하는 단기계약 압박으로 노후선박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선령 25년 이상 선박이 58%에 육박한 실정으로, 선박에 대한 재투자나 선원에 대한 근로복지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,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

는 경우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 5%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36 신설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4조의36(내항해운 선화주 상생을 위한 세액공제 등) ① 내국인인 화주 기업이 「해운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(이하 “내항선사”라 한다)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.

1. 3년이상 5년미만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: 100분의 3
2. 5년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: 100분의 5
3.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인증을 받고 그 등급이 4등급 이상인 선박(이하 “환경친화선박”이라 한다)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: 100분의 5

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계약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4조의36(장기계약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) ① 내국인인 화주 기업이 「해운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(이하 “내항선사”라 한다)과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.</u> <u>1. 3년이상 5년미만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: 100분의 3</u> <u>2. 5년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: 100분의 5</u> <u>3.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인증을 받고 그 등급이 4등급 이상인 선박(이하 “환경친화선박”이라 한다)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</u>

우: 100분의 5

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